

[2023년 2차 사업 공고문]

2023년 IP(지식재산)나래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(2차)

창업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·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IP(지식재산)나래 프로그램 지원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1. 사업 목적

-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과 전환창업으로 재도약을 노리는 중소기업의 보유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기반 기술경영 융·복합 컨설팅 지원
- 신규 R&D방향성 설정 및 강한 특허권 창출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IP(지식재산)경영전략을 통해 해결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

2. 사업 내용

- (지원내용)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 맞춤형 IP(지식재산)기술경영 융·복합 컨설팅 지원

구분	지원내용
IP(지식재산)기술전략	유망기술도출, IP분쟁예방 전략, 강한 특허권 확보, 경쟁사 기술분석,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, R&D방향성 설정 등
IP(지식재산)경영전략	IP인프라/조직 구축, IP자산 구축, IP사업화 전략, IP브랜드/디자인 경영, 타 기관 지원사업 연계, 기타 경영컨설팅 지원

- * 기업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 지원
- (지원규모) 25,000천원 이내(정부지원금 17,500천원 이내)
 - 기업분담금 : 30% (현금 15%, 현물 15%)
 - * 기업분담금 중 현물은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현물 대응
 - ** 단,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(금년도 창업기업 해당없음) 예비사회적/사회적 기업의 경우 현금 10%(현물 20%)로 기업분담금 감면
- (최종결과물) : 특허출원 및 IP(지식재산) 기술경영 융·복합 컨설팅 결과 보고서

3. 지원 대상

-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
 - * 기업의 업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 - ** 창업 및 업력 산정은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준용
- 전환창업 후 5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

4. 신청방법

- (신청기간) 2023년 5월 24일(수) ~ 2023년 6월 20일(화) 18시까지
- (신청방법)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(www.ripco.org/pms)
- (지원센터 기준)
 - 본사(본점) 소재지 기준 관할 지역지식재산센터 신청을 원칙으로 함
 - 기업의 지사(지점),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해당 지역으로 신청 가능(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수)
 - 신청 센터 기준 지역 본사(본점)·지사(지점)·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업 수행
 - 법인기준 1사(법인)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1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함
 - * 다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복수의 과제 신청불가
 - ** 본사 또는 지사(지점)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역중 1개 지역에 1개 과제만 신청가능
- (제출서류)

필수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통합신청서 ([붙임1]양식) · 사업자등록증 사본 · 중소기업확인서 · 사업추진(활용)계획서([붙임2] 양식)
선택제출 (해당기업만 제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최근 3년 재무제표 사본 · 직무발명보상규정 사본 ·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서
가점 증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
전환창업 증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전환계획 승인문서
현금부담금 감액증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전년도 無매출기업) :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· (예비)사회적 기업 :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사회적기업 인증서
지사(지점)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역으로 신청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통 : 사업자등록증 · 지사(지점) : 현물투입인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· 기업부설연구소(전담부서) : 연구소 및 전담부서 등록증, 연구개발인력현황 신고내역

* 사업공고일 기준 유효 서류에 한하여 인정(유효기간 등 확인 必)

- (가점사항) 가점항목 해당시 가점 각 2점, 최대 6점까지 인정

가점항목	증빙서류	가점
장애인기업	장애인기업확인서	2
여성기업	여성기업확인서	2
청년창업기업	주민등록증 등	2
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	사회적·예비사회적기업 확인서	2
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	지식재산공제 가입서	2
지역특화산업	신청서 내 KSIC 코드 기재	2
IP-Market을 통한 기술이전·아이디어 구매 기업	계약서, 협약서 등	2
K-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·수상기업	왕중왕전 진출·수상확인서, 공문 등	2
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기업	지원이력 증빙문서	2

* 지역특화산업 여부는 별도의 증빙없으며 KSIC코드 기재 필수(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)

5. 선정절차

- (현장실사) 서류 제출완료 기업 대상으로 보유기술 검토 등을 위한 컨설턴트 현장실사
 - * 실사는 비대면으로 대체될 수 있음
- (1차 선정) 신청 기업이 작성한 간이키트 및 현장심사 결과 반영하여 서류심사
- (2차 선정)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종심사
 - * 별도의 신청기업 발표심사는 없음

6. 사업수행절차

- (수행사 선정) 5배수 수행사 추천(컨설턴트) → 참여 수락(협력기관) → 수행사 선정(신청기업)
 - * 컨설턴트는 신청기업의 보유기술, 제품·서비스, 사업분야 및 협력기관의 수행인력,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력기관을 추천
 - ** 추천 전 수혜기업이 특정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없으며 부당거래 적발시 강력 규제
- (협약) 지역지식재산센터·수혜기업·협력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및 기업분담금 납부 등
- (컨설팅 수행)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와 협력기관 연구원이 수혜기업 현장방문
 - * 8회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지원, 일부 회차 비대면 진행 가능
- (최종보고 및 평가) 컨설팅 최종보고 및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3자간 최종평가

7. 지원 혜택

- 과제 종료 후 2년간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및 인허가 보증보험 무담보 이용
- 추가지원 : 과제 종료 후 IP나래 수혜기업 대상 해외권리화(PCT) 지원
 - * 지역지식재산센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상이

8. 문의처

-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: 1661-1900

센터명	연락처	관할구역
서울센터	02-2222-3860	서울특별시 전지역
대전센터	042-933-7818	대전광역시 전지역
울산센터	052-228-3088	울산광역시 전지역
부산센터	051-714-6210	부산광역시 전지역
대구센터	053-222-3147	대구광역시 전지역
인천센터	032-810-2871	인천광역시 전지역
광주센터	062-604-9247	광주광역시 전지역
세종센터	044-998-7772	세종시 전지역
전남센터	070-4285-6930	전라남도 전지역
전북센터	070-7775-2626	전라북도 전지역
제주센터	070-4566-9105	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
경기센터	031-877-6933	수원, 성남 제외 경기도 전지역
경기남부(수원)센터	031-8000-9456	수원, 성남
충북센터	043-229-2736	청주, 진천, 증평, 괴산, 보은, 옥천, 영동
충북북부센터(충주)	043-843-7005	충주, 제천, 단양, 음성
강원센터	033-749-3358	원주, 횡성, 속초, 홍천, 평창, 고성, 양양
강원서부(춘천)센터	033-254-6591	춘천, 인제, 철원, 화천, 양구
강원남부(태백)센터	033-552-5555	태백, 삼척, 정선, 강릉, 동해, 영월
경북센터	054-274-5533	포항, 경주, 영천, 경산, 영덕, 청도, 울진, 울릉
경북북부(안동)센터	054-859-3091	안동, 의성, 군위, 영양, 청송, 문경, 예천, 영주, 봉화
경북서부(구미)센터	054-454-6613	구미, 김천, 상주, 칠곡, 성주, 고령
충남센터	041-559-5748	천안, 아산, 예산, 공주, 청양, 계룡, 부여, 논산, 금산
충남서부(서산)센터	041-663-0041	서산, 당진, 태안, 홍성, 보령, 서천
경남센터	055-210-3085	창원, 김해, 밀양, 양산, 창원, 함안, 통영, 거제
경남서부(진주)센터	055-762-9412	진주, 고성, 사천, 남해, 하동, 산청, 함양, 거창, 합천, 의령

참고1

참고사항

신청 사이트 안내

- (1)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 (www.ripc.org/pms)을 통한 접수
 - 기업회원 가입 필수
 - 사업관리시스템은 공동인증서로 서비스 이용 가능
 - [지원사업공고] → 센터별 [2023년 IP나래 프로그램 공고] → [지원사업신청]
 - * 지역센터별 지원공고를 클릭하여 신청
 - 신청절차



유의사항

- (1) 현장실사 및 선정심사는 제출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심사(작성중인 경우 제외됨)
- (2) 기업 소재지 및 관할의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확인하여 해당 지역으로 신청
- (3) 선정 후에 기업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선정취소, 중단 및 환수될 수 있음
 - * 지역예산이 매칭되어 운영되는 사업으로 선정 후 지역이동 불가

중복제한

- ※ 지역지식재산센터 타사업-IP나래 중복지원 제한
- (1) IP기반해외진출(舊글로벌IP스타기업) 지원이력이 있는 기업 지원불가
 - * 졸업기업, 중도포기기업, 수혜중인 기업 모두 포함
 - (2) 중소기업IP바로지원 특허맵(일반) : 당해연도 이중 지원불가
 - (3) 스타트업지식재산 바우처 : 당해연도 이중 지원불가
 - * 중소기업IP바로지원 특허맵(일반)과 스타트업지식재산바우처는 과제 동일유사 여부와 무관하게 이중수혜 불가

지역특화산업 가점

- (1) 첨부지역별 주력사업 관련 KSIC코드를 입력
 - * 참고파일 : [참고_지역특화] 지역별_주력산업_참고용(개편후 KSIC코드)
- (2) 지역특화산업 가점은 증빙 불필요
- (3) 지역특화산업 수행관련한 사업현황 및 업종, 관련 KSIC 적합여부 등을 서류 및 현장실사를 통해 컨설턴트가 검토하며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가점 부여

부당거래 제한

※ 협력기관 수행사 선정과정에서 부당거래 적발 시 강력 규제

- (1) 부당거래 : 수행사의 현금 부담금 대납, 현금 및 물품 제공, 사업대리 신청 등
- (2) 규제 사항
 - 1) 과제 중단(지원기업 현금부담금 미반환)
 - 2) IP나래 프로그램 참여제한(영구)

지사(지점) 및 기업부설연구소 신청

- (1) 기업의 지사(지점),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시 신청가능
 - * 지사(지점) 및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 이후 본사로 통폐합되어 폐업되는 경우 선정 취소
- (2) 신청요건 : 아래의 신청요건 및 증빙첨부
- (3) 본사와 중복신청 불가 (중복신청 확인시 선정심사대상 제외)

구분	신청 요건(모든항목 충족)	증빙
지사(지점)	①지사(지점)의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②IP나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현물 투입 인력의 주 근 무지가 지사(지점)인 경우	① 사업자등록증과 연계된 해당 인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③ 지사(지점) 사업자등록증
기업부설연구소	①기업부설연구소의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②IP나래 프로그램을 실제 수행하면서 현물 투입하는 인력이 해당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인력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	①기업부설연구소 등록증 ②연구개발인력현황 신고내역 ③기업부설연구소 사업자등록증

참고2

통합신청서 작성요령

기업현황

- (1) 기업명 :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명 기재(예: (주)0000, △△△(주), □□기업)
 - (2) 기업유형 : 법인인 경우는 법인기업, 개인이 대표자인 경우는 개인 기업 선택
 - (3) 중소기업구분 : 중·소기업 범위 확인은 “중소기업기본법” 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” 을 준용하여 기재 예)중기업, 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
 - (4) 총 임직원수 : 신청당시 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” 기준으로 작성
 - (5)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: 사업자등록증 상의 번호기재
 - (6) 대표자 : 대표자 전부를 기재
 - (7) 소재지 :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,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(등본상의 주소와 실재가 다를 때에는 2개를 모두 기재)
 - (8) 주생산품 : 해당기업의 주력생산품 기입(복수입력 가능)
 - (9) KSIC 코드 : 한국표준산업분류(10차) 표를 기준으로 기재
 - (10) 설립일자 :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연월일,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(예: 2021. 7. 6)
 - (11) 업종 : 업체의 주력 사업분야 업종을 해당 보기 중 선택하여 표기
 - (12) 담당자 : 해당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담당자의 실명, 연락 가능한 E-mail 주소, 소속부서, 직위, 휴대폰 번호 등 정보를 입력
 - (13) 센터지원사업 수혜여부 : 기존에 지역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업의 연도와 사업명 기입
 - (14) 동의서 : 동의에 모두 체크하고 협약 시 센터별 요구에 따라 제공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
 - 1) 신용/지원 이력 정보 제공 및 조회, 활용을 위한 동의
 - 2) 기업 분담금 납부동의
 - 3) 지원금 반납 서약서
- ※ 전년도 양식 사용 시 불선정 처리

일반현황

- (1) 매출액 : 최근 3개년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(재무제표 기준)
- (2) 고용인원 : 최근 3개년 고용인원 기재

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

- (1) 출원건수 : 창업 후 현재까지 출원한 지식재산권의 누적건수 기입
(예 : 창업 후 현재까지 출원한 특허가 20건이고 그중에 10건이 등록되었더라도 20건 입력)
- (2) 등록건수 : 창업 후 현재까지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누적건수 기입
- (3) 지식재산 활용여부
 - 자사실시 : 최근 3년 동안 자사가 보유한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을 자사 생산제품/협력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 활용한 건수 기재
 - 양도(라이선스 out) : 최근 3년 동안 자사가 보유한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권을 타사에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·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건수 기재
 - 매입(라이선스 in) : 최근 3년 동안 외부로부터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권을 매입하거나 전용실시권·통상실시권을 설정 받은 건수 기재

지식재산 경영 인프라

- (1) IP(지식재산)인력 : 지식재산 관련 업무 담당인력의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
- (2) IP(지식재산)인력 현황 : 전담인력과 겸임인력을 구분하여 인원수 기재

<IP(지식재산)인력의 개념>

 - 전담인력 : 지식재산 관련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인력
 - 겸임인력 : 지식재산 관련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인력
- (3)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 보유 여부 :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하여 사내규정으로 도입한 경우 보유로 선택하고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보유로 선택
- (4)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여부 :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
- (5)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번호 : 인정받은 연구소는 인정번호를 기재

참고3

제출서류 등록 참고사항

- ※ 첨부파일 중 사본은 이미지나 PDF형태로 첨부
- ※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만료 전의 서류에 한해 인정

필수 첨부파일 등록

- (1) 통합신청서 :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제출
- (2) 사업자등록증 사본 :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
 - * 지사(지점) 및 기업부설연구소로 신청시 지사(지점) 및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
- (3)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: 법인기업에 해당(법인기업은 필수 제출)
- (4) 중소기업구분 입증서류 : 중소기업확인서 (유효기간 확인 필수)

[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] ※ 중소기업 범위 확인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을 준용
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<http://sminfo.mss.go.kr/>) → 중소기업범위
→ 중소기업여부자가진단 → 회원가입 →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

- (5) 사업추진(활용) 계획서 :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
 - * 전년도 양식 사용 시 불선정 처리
- (6) 간이 KIT : 간이키트 작성

선택 첨부파일 등록

※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

- (1) 재무제표 : 최근 3년간(또는 직전년도) 사본
- (2) 직무발명보상규정 사본
- (3)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 사본

가점증빙 서류 등록

- (1) 여성기업 확인서 사본 : 신분증 불가
- (2)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
- (3) 청년 창업 대표자 신분증 사본 : 주민번호 뒤 7자리 제외하여 첨부
- (4) 장애인기업 인증서 사본
- (5) 지식재산공제 가입증서 사본
- (6) KIPA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한 기술이전·아이디어 구매기업 : 협약서, 계약서 등
- (7) K-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·수상기업 : 왕중왕전 진출·수상확인서, 공문 등
- (8)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기업 : 지원이력 증빙문서

기타증빙 서류 등록

- (1) 전환창업기업 증빙 : 중진공 사업전환계획 승인문서
- (2) (예비)사회적기업 현금부담금 감액증빙 :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
- (3) 전년도 무매출기업 현금부담금 감액증빙 :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*, 사업장현황신고서**
 - 금년도 창업기업은 해당없음
 - 창업의 기준 :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, 개인기업은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(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)
 - *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'22년 1기, 2기 반영자료 제출
 - **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면세사업자에 해당